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1년도 제1차 종류(제1종 종류주)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는 2021.09.13 15: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본점회의실)에서 종류(제1종 종류주)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9명	발행주식총수 2,640,000주
제1종 종류주주수 3명	제1종 종류주식수 900,000주
제1종 종류주식 출석주주수	3명
제1종 종류주식 출석한 주주의 주식의 총수	900,000주

의장 대표이사 박영희는 본 회의의 소집에 대해 모든 주주가 그 소집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는바, 본 회의의 소집 절차가 정관에서 정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출석한 주주가 정족수에 충족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의장은 주주총회의 부의안건을 상정하다.

■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의장은 제1호 부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장은 참석한 주주 전원에게 정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 바, 이에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출석주주 전원은 면밀히 검토한 후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고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5시3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21년 9월 13일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대 표 이 사 박 영 희

(인)



별첨. 개정 세부 사항

변경전	변경후
제 9 조의 2 (종류주식의 내용) -중략- ⑤ 어느 사업연도에 제1종, 제2종 종류주식 또는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⑥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제2종 종류주식 또는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2.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종, 제2종 종류주식, 제3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3.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40%는 제1종, 제2종 종류주식 및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6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의 2 (종류주식의 내용) - 중략 - ⑤ 어느 사업연도에 제1종, 제2종 종류주식 또는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⑥ (신설) 본 정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이전 어느 사업연도에 제1종, 제2종 종류주식 또는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2.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액면금액에 연 3.0%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배당한다. 3.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액면금액에 연 7.5%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배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액면금액에 연 0.74%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배당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 배당가능이익 중 40%는 제1종, 제2종 종류주식 및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6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⑦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제2종 종류주식 또는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2.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종, 제2종 종류주식, 제3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3.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40%는 제1종, 제2종 종류주식 및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6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⑧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부 칙<2021. 9. 13. 제정>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